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

인재경영실 인사부

전부개정 2010.10.08. 지침 제 95호
개정 2011.11.03. 세칙 제 32호
개정 2013.01.31. 세칙 제 41호
개정 2017.01.06. 세칙 제104호
개정 2022.04.28. 세칙 제193호
개정 2022.09.01. 세칙 제194호
개정 2023.09.12. 세칙 제215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직제규정」 제11조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방형직위의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7.1.6.>

제1조의2(적용범위) ①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채용방법·계약·복무·보수 기타 인사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을 따른다.

② 개방형직위 중 심사위원(근무형태가 주간 근무일수 전체를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제외하고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7.1.6.]

제2조(충원시기) 개방형직위는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직위에 소속직원(이하 “경력직 직원”이라 한다)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제3조(채용방법) ① 개방형직위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으로 한다. 다만, 채용하고자 하는 개방형직위의 직무분야와 관련 있는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선발하거나, 직무특성상 특정인을 초빙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3.>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에 의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③ 공개경쟁채용 시 채용직위, 계약기간 및 응시자격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재공모하거나, 경력직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6., 2023.9.12.>

제4조(자격기준) ① 개방형직위 채용자격 기준은 별표 개방형직위 임용자격기준에 의하되,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11.3., 2017.1.6.>

② 원장은 별표 개방형직위 임용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직무내용, 특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정 자격이나 경력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규정」 제4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7.1.6., 2022.9.1>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심사위원회) ① 원장은 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자격요건, 직무수행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방형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 상임이사로 한다. <개정 2022.9.1>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임원, 1급 직원, 1급 직위 보직자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 중 서류전형위원은 1명 이상, 면접전형위원은 절반 이상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

③ 심사위원회의 서류전형위원은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면접전형위원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한다. <개정 2017.1.6., 2022.9.1.>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사항과 관련하여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채용계약) ① 개방형직위에 채용되는 직원은 계약직으로 한다.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 직원이었던 자가 동일 직급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전보 임용된 것으로, 하위직급의 직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승진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직원 중 소장, 1급 및 선임연구위원 직위에 임용되는 직원은 매주 2일 이상 상근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6.>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 개방형직위 임용계약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및 담당업무

2. 복무·보수에 관한 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직으로 임용되는 직원은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6.>

제7조(계약기간) ① 개방형직위 채용계약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3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개방형 임용자의 근무성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제 및 정원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방형직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채용계약의 해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직위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제4호의 경우 잔여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22.9.1>

1. 본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사직원)으로 제출한 때
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인사규정」 제65조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될 때
5.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
6. 채용계약 또는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7. 심사평가원의 업무형편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필요가 없을 때
8. 「인사규정」 제71조에 의한 정년에 도달할 때
9. 기타 해지사유가 있다고 원장이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직원은 퇴직희망일 3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의 효력은 원장이 사직원을 수리함으로써 발생된다.

제9조(경력직 직원의 임용) 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5조제1항의 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경력직 직원 중에서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자를 1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3조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충

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17.1.6.>

②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력직 직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③ 제2항에 따라 경력직 직원이었던 자의 개방형직위 임용이 취소된 경우의 해당 개방형직위는 제1항을 준용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1.11.3.>

제10조(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①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 직원은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직원이었던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한다. <개정 2011.11.3>

③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직원이었던 자를 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때에는 해당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제3조에 의한 방법으로 개방형직위 임용을 실시하고,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결원 발생시까지 경력직 직원 중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개방형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제11조(전보·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직원과 개방형직위의 지정 당시 해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 규정에 의한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복무 등) 개방형직위에 계약직으로 임용된 자의 복무, 휴가 등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중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퇴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며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2.9.1>

1. 삭제 <2022.9.1.>

2. 삭제 <2022.9.1.>

제13조(근무성적평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인사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6조에 따른 직무수행계획 등에 기초한 추가평정을 실시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6.>

제14조(교육) 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를 외부교육 기관·연구기관 및 전문단체 등에 파견 또는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제15조(보수 등)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3.1.31., 2017.1.6.]

제16조(직무수행계획 등) ① 개방형직위에 응모하는 자는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 후 30일 이내에 수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② 제1항에 따라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해당연도 직무수행실적보고서를 해당연도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그 제출 시기를 변경하거나 수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방형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직무수행실적보고서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는 업무성과평가 부서에 제출하는 평가자료 및 평가방법으로 같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1.3>

제17조 삭제 <2017.1.6.>

부칙

이 지침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세칙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3.1.31., 2017.1.6., 2022.4.28.>

개방형 직위 임용자격기준

구 분	임 용 자 격 기 준
소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직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1급직 이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부교수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당해 분야의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기타 당해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연구 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1급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1급 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2급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당해 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정부산하기관 또는 1,000인이상 법인체의 1급(부서장)상당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당해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10년) 이상인 사람 5. 의(약)사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단체·의료기관·주식회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단체 또는 법무법인·개인사무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기타 당해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연구 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2급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2급 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3급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정부산하기관 또는 500인 이상 법인체의 2급(부장)상당직 이상에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당해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5년) 이상인 사람 5. 의(약)사 면허증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단체·의료기관·주식회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단체 또는 법무법인·개인사무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기타 당해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연구 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심사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4.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약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보건의약 또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7.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자동차보험 심사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2.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로서 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3.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한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4.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약학대학·의료기관·약국 또는 한국회귀의약품센터에서 종사한 사람 5. 기타 당해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연구 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자동차보험 재정위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보험 관련기관에 1급 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2급직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당해 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정부산하기관 또는 1,000인이상 법인체의 1급(부서장)상당직 이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박사(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대학교에서 관련학과의 전임강사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하거나 당해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10년) 이상인 사람 5. 기타 당해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업무·연구 실적이 있어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2.9.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31., 2017.1.6., 2023.9.12.>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사업주”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00)
 - 단, 사업주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__시부터 __시까지(휴게시간: __시~__시) 주 5일 근무
단, 「인사규정」 제45조에 따라 변경 가능
5. 휴 일: 주휴일(일요일) 및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유급휴일
6. 임 금
 - 월 지급액
 - 기본연봉 월액 : 원
 - 직무수행급 : 원
 - 기타급여
 - 가족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별도 지급
 -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경평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지급함(연 1회)
 - 임금지급일
 - 직무수행급 : 매월 __일(휴일의 경우 익일 지급)
 - 그 외 급여 : 매월 __일(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법령에 따른 사회보험료 원천징수 후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가

- 연가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하며,
그 밖의 휴가는 「인사규정」 제4장을 준용하여 부여

8.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본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며, 사업주는 근로자 요구와 관계없이 1부를 교부함
- 본 근로계약의 내용 중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가 정하는 내용이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음

9. 성실이행의무

- 계약당사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이 이행하여야 함
- 그밖에 사업주의 내규, 단체협약 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도 또한 같음

10. 계약의 해지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방형직위 운영세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 세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개방형직위 운영세칙」 제8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근로자가 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 동 세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사업주의 내규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름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화: 1644-2000)

주 소 :

대 표 자 :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 약 서

본인이 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함)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의 위반 시에는 귀원의 처분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심사평가원의 「개방형 직위 운영세칙」을 준수함은 물론 직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2. 직무상 지득한 심사평가원의 비밀과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일지라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심사평가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본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겠습니다.
5. 본인의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근로기준법령·노동관계 법령 및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